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5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07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1. 23.
판 결 선 고	2019. 2. 20.

주 문

1.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게 한 취득세 833,039,550원, 지방교육세 71,238,780원, 농어촌특별세 35,619,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를 설정하고,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관리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그 당시 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투자신탁은 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3. 2. 15. 사천시 D 대 5,565.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서 취득세 603,258,430원, 지방교육세 60,325,860원, 농어촌특별세 30,162,930원을 감면받았다.

라. B은 2013. 2. 15. 금융감독원장에게 구 자본시장법 182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신탁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3. 3. 6. 등록이 완료되었다.

마. 피고는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2014. 12. 2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할 당시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구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감면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위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833,039,550원, 지방교육세 71,238,780원, 농어촌특별세 35,619,3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5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법령위반

이 사건 감면규정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4.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감면의 요건으로 가중하고 있지 않다.

2) 비과세관행

과세관청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감면규정을 적용을 계속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세액의 과다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부과액수는 종전에 원고가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의 법령위반 주장부터 살핀다.

구 자본시장법 제182조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5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고,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05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사건 감면규정을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해석처럼 B이 금융위원회에 이 사건 투자신탁의 등록을 마쳐야만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별다른 근거가 없어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위반된다.

게다가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 · 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이후 곧바로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5

그러므로, 원고의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나머지 주장들을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석원

판사 박수완

판사 현정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5

별지

관계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5

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5.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5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 조세특례제한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5

다. <개정 2011. 5. 19., 2013. 1. 1.>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지방세법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